

VIII-3 세금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세금의 지불방법

- ① 사업소에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부민세, 시정촌민세)
자신이 다니는 회사·사업소가 본인의 급여부터 세금분을 빼서 당신대신에 지불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인에게 다른 수입이 없다면 특별한 수속은 필요없습니다.
- ② 회사나 사업소에서 일하지 않고있는 경우, 또 회사나 사업소에서 일하고있어도 급여부터 세금이 지불되지 않고있는 경우
당신의 소득을 매년 세무서에 신고 (보고) 하여 시정촌부터 보내오는 납부서에 따라 소득세, 부민세, 시정촌민세를 지불합니다. 또 자신이 회사나 사업소를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사업세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세의 종류

- ① 소득세
급여에서 지불되지 않고있는 경우 (1-②), 세무소에서 확정신고를 합니다. 확정신고란 1년간의 급여 등의 수입부터 지불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보고) 하는것을 말 합니다. 확정신고는 매년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이며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신고해주시시오. 용지 등은 세무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구하거나 재해나 큰 병으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거나 하여 돈을 지불했을 경우, 신고하면 1년간의 수입분에서 감면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서와 상담해주시시오.
소득세에는 2국간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센터 (각 세무서의 전화번호에 걸어 1을 누른다) 혹은 당신의 모국의 영사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IX-3)

※ 소득세의 영어설명

[URL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gaikoku301.htm](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gaikoku301.htm)

- ② 부민세·시정촌민세
오사카부에 거주하면서 일정액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여 부민세·시정촌민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으로 되는 전년의 소득은 전년의 수입부터 각종공제를 한 액수입니다.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면 그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1월1일현재의 주소지의 시정촌이 과세하지만 급여소득자는 급여에서 공제되며 그외의 분들은 납부서가 송부되어 오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은행 등으로 납부합니다.
오사카부의 부민세는 과세소득의 4%이며 여기에 균등할액의 1800 엔이 더해집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이에는, 삼림보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부민세 균등할부액에 연 300 엔이 가산됩니다.) 한편 시정촌민세는 과세소득의 6%로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3500 엔이 더해집니다. (지정도시는 부민세 2%, 시정촌민세 8%)

부세안내

[URL https://www.pref.osaka.lg.jp/zei/alacarte/prefectural-taxes-k.html](https://www.pref.osaka.lg.jp/zei/alacarte/prefectural-taxes-k.html)

- ③ 고정자산세
매년 1월1일현재 당신이 부동산 (토지, 건물) 이나 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들이 있는 시정촌에 고정자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액은 부동산 등의

평가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납부서가 송부되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은행 등에서 지불해주시오.

④ 자동차세, 경자동차

4월 1일시점에서 자동차, 경자동차, 오토바이의 차량검사증상의 소유자에게 과해집니다. 매해 4월~5월에 납부서가 송부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지불해주시오.

⑤ 기타 세금

a) 소비세

온갖 물품의 구입, 서비스에 대하여 세율 10%가 듭니다만, 일부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8%)가 과해집니다.

b) 기타

기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